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및 수사 절차를 중심으로 -

최근 국회는 2026. 3. 1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신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정부이송을 거쳐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 의거 공포 후 8개월 후인 올 연말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신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특히 향후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및 수사 절차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및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 확립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며,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절차 등을 신법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제1~4조),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제6~15조),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 규정(제15~19조), 노동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사건 처리 절차(제20~23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나. 노동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업무수행 근거 정비

기존에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의해 권한과 집행절차가 규율되었으나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이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법은 노동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Related Areas

송무

노동분쟁

Contact

이시원 변호사

02-528-6147

shiwonlee@yulchon.com

김수현 변호사

02-528-5070

soohyun@yulchon.com

김석희 변호사

02-528-6667

seokheekim@yulchon.com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 삭제 등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공소청법이 2026. 3. 24. 공포되어 10. 2.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발맞추어, 신법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수사는 **노동감독관이 전담**한다고 규정하여 **검사를 제외**하였습니다(제24조). 종래에도 경찰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었으며, 이는 신법에서도 동일합니다.

다.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정부가 마련하였던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제외되어 의결되었으며 그대로 공포되었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소청법 시행 시까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감독관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소청법 입법 과정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정부안과 달리 삭제된 사정에 비추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폐지하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이 충돌할 경우 새로운 법률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소청법 시행 시까지 형사소송법의 위 조항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후에는 입건, 강제수사, 송치 여부에 대해 검사의 지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감독관이 수사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 및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에도 보완수사요구권 또는 보완수사권이 유지된다면 검사도 송치 후에는 보완수사요구 또는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위 규정 역시 공소청법 및 신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제시권 및 전건 송치 의무화

신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감독관의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 또는 사업장을 수사하거나 수사 대상이 둘 이상의 관할에 속하여 일관성 있는 처리 결과가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법 제27조는 “노동감독관은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는 사법경찰과 달리 불기소 의견에 이른 사건도 모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의거 수사종결권을 가진 사법경찰과 뚜렷한 제도적 차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신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근로감독 사무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 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28조).

2. 시사점

이번 신법 제정은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절차 등을 통합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노동감독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근로감독관의 권한 행사 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 하에 17개 광역시·도지사가 사업장 감독권한 일부를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 주체를 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발맞추어 노동감독의 범위와 역할도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신법이 **1) 노동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제시권을 신설한 점, 2) 수사종결권을 가진 사법경찰과 달리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질만한 사건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신법 및 공소청법 입법,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노동감독관이 전속 관할을 가지는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특히 입건지휘, 송치지휘) 없이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되, 수사 종결 시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는 하여야 하는 업무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노동감독관의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보다 빈번히, 또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산업재해 사건에 있어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